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721
----------	------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 학습.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식 확산 및 시민 기후소양 함양에 기여해 왔음
-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전시관으로서의 복합 기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홍보.전시.교육 업무의 수행을 위해 2012년 개소 이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음.
- 다. 수탁기관과의 협약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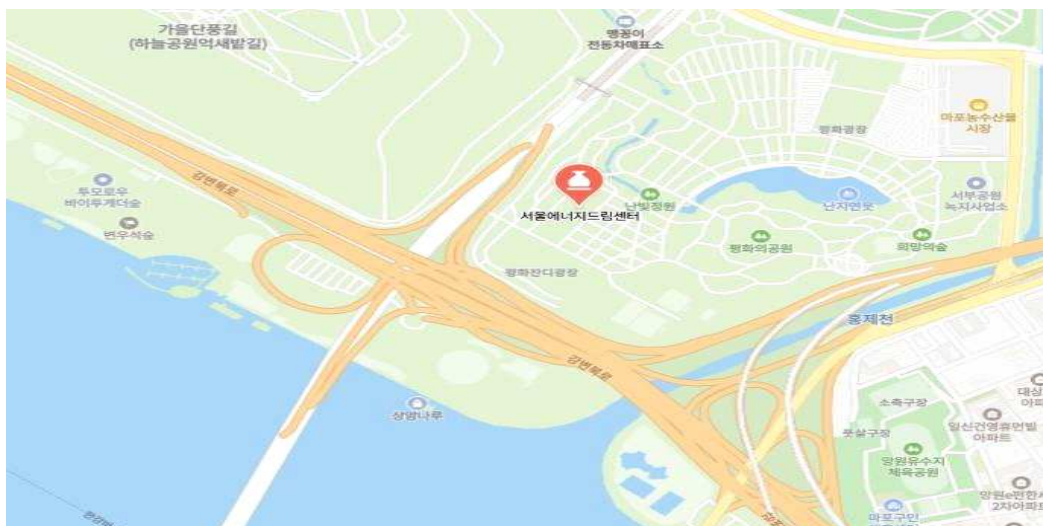
가. 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2027.1.1. ~ 2029.12.31.(3년)
- 위탁유형: 시설형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사업비: 1,512백만원(2027년 편성기준에 따라 세부내역 재산출 예정)
- 주요 위탁사무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건물 및 야외부지 관리
- 전시·체험시설물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
- 최적화 운영 모니터링,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사고 관리 등
- 신재생에너지 최신 동향 기술 정보 제공 및 제로에너지하우스 운영 모델 공유
- 에너지·기후위기 주제 전시 기획 및 스마트 그린 전시관 구축
- 시민 참여 에너지·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나. 시설 개요

- 시설명: 서울에너지드림센터
- 위치: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14(상암동 1535-3)
- 규모: 연면적 $3,762m^2$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 $13,039m^2$
- 주요시설: 탄소중립체험관, 기후변화배움터, 다목적실 등
- 위치도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 필요성

-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물에너지 분야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며,
-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교육콘텐츠 개발·운영 및 전시 운영에는 환경교육 분야 업무수행 능력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됨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기술, 경험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라. 주요 변동사항

- 내용: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위탁사무 분리 후 센터별 민간위탁 신규 추진
- 사유: 양 기관의 업무영역이 상이하여 사무 분리 필요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에너지·기후변화 전문 체험교육 등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교육에 특화
서울시 환경교육센터	환경정책 연구,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환경네트워크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 기반 강화에 중점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2026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과통보(조직담당관-5435, '26.5.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7년 예산편성 시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오화민(☎ 2133-3538)